## 2020년도

##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1. 10.

대한민국정부

## 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374건)

	T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1.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	<ul> <li>&lt; 조치실적 : 완료 &gt;</li> <li>○ 산하 공공기관에서 채용 시 법정채용의무 준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채용이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 요청('21.5)</li> <li>★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채용 목표 달성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li> </ul>
기획조정실	2. 산하 공공기관이 LTV 규제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할 것	○ "주택대출금 등을 합리적으로 편성,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사내복지기금 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추가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3. 국토부 소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위원구성, 회의 개최실적, 회의록 관리에 대하여 개선할 것	○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수립·관리('20.11월)
기획조정실	4. 포스트코로나, 경기 부양을 위한 SOC 예산 확대를 검토할 것	활동내역을 월별로 공개 추진('20.9월~) < 조치실적: 완료 >  ○ '21년 우리부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혁신 및 안전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고, 재정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해 23.6조원 편성(전년 比 15.1%↑)  * 예산 추이(조원): ('19) 17.6, ('20) 20.5, ('21) 23.6  - 이중, SOC 예산은 21.5조원으로 전년 (18.7조원) 대비 14.9% 상향된 수준이며, 노후 SOC의 선제적인 유지보수 등 안전투자는 약1.1조원 증액(4.8→5.9조원)  - 경기회복에 영향이 큰 SOC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위기 극복 기여에 적극 노력  * SOC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 70.9%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5. 국토교통 R&D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완료 &gt;</li> <li>○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사업화 지원 촉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개통('21.4.15.)</li> <li>○ 우수 R&amp;D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중소 ·벤처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20.10.20)하여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li> </ul>
국토도시실	6.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철학을 국토교통부의 각종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 국토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관련부처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7. 자연보전권역 내의 4년제 대학 신설·이전, 오염 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 면적 규모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ul> <li>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하여 수도권 내 인구 집중유발시설 및 권역별 운용방안에 대한 검토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li> </ul>
국토도시실	8.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제조시설 면적 증가 등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 심의 대신 국토교통부장관 과의 협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지면적(공장용지 면적)의 증가없는 기존 공장(제조시설)의 증설은 수도권 심의나 국토부 협의가 필요 없음
국토도시실	9. JDC가 추진해온 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국토 교통부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0. JDC의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한 치밀한 경영 전략을 수립할 것	
국토도시실	11.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등 대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JDC의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JDC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다변화 검토를 위한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 완료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2.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을 조성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것	○ '21년 용역비(국비 3억원) 지원 확정 통보('21.1월)
국토도시실	13.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설치 가능시설 및 허용 면적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	○ 상구원 모오 및 개발제안구역 관리 등을 고려하여 축사 허용면적 확대
국토도시실	14.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기준을 완화하여 집단취락의 해제가능 면적 확대를 검토할 것	U 집단취닥 해세기운 완화 시 취닥시구의 대폭적인 해제와 함께 기 해제취락의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예산이 구역내 주민 생활지원에 효 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O GB주민지원사업 중 생활기만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
		제도개선 등 검토
국토도시실	16.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전용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방안
국토도시실	17. 샌드위치패널 등 마감 재료 시험방법을 개선 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 마감재료는 심재 등  각 재료마다 별도로 성능을 평가하고, 실대형(유사모형) 시험을 추가로 실시토록 제도 개선완료 (시행 '21.12.23)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8. 가연성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 심재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기준 및 성능 평가 기준을 강화할 것	○ 샌드위치패널, 내부 단열재 화재안전 성능기준 강화 추진 완료
국토도시실	19. 건축자재에 대한 시험 성적서 관리 및 건축 자재의 유통·납품 과정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	○ 방화문,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 인정제도 도입 완료(건축법 개정
국토도시실	20.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하는 고층 건축물 현황을 조사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완료 &gt;</li> <li>○ 지자체 협조를 통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기존 고층건축물(30층이상) 조사 실시('20.10월~'21.3월)를 완료하고 조사결과통보 및 외장재 교체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유도를 위한 협조 공문 발송('20.12월, '21.9월)</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2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대지면적의 80% 이상에서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li>신중검도 필요</li> <li>* 건축물의 노후화, 구조안전 문제 등 사유로 건축물은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한해 대지 소유권 확보 예외를 허용하고</li> </ul>
국토도시실	22.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방안을 검토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완료 &gt;</li> <li>○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및 건축법에 따른 노유자시설로서 화재시 대피 등 피난안전을 위해 발코니 존치 필요</li> <li>* 조응천, 고영인 의원실 등 검토자료 제출</li> <li>** 노인복지주택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설될 수 있어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과 혼선 우려, 아울러 생활숙박시설 등 다른 비주택 건축물까지 발코니 확장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곤란</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23. 외부에 노출된 배수배관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연성 배수배관은 내화 구조 내부에 설치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배수배관이 내회구조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틈을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국토도시실	24. 녹색건축인증 사후관리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 할 것	
국토도시실	25.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 열재를 사용하여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건설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공장생산 직후 제품으로 품질시험* 실시 결과, 극한환경(고온·저온 등)에서 단열재의 체적변화 등이 현행 KS기준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용성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음</li> <li>★ 단열재 관련 ISO기준 등을 바탕으로 극한 환경에서의 체적변화 등 확인</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26. 지붕 인정내화구조와 같이 준비가 되지 않 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 행되지 않도록 품질 인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과정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국토도시실	2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골재선별 · 파쇄업을 영위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 필요	<ul> <li>지자제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li> </ul>
국토도시실	28. 10층 이하의 오피스텔 건축물 화재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담당 부처인 금융위 원회에 관련 법령 개 정을 협의할 것	<ul><li>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로 10층 이하 오피스텔 건축물 화재보험 의무화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알림 및 법령</li></ul>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29. 위반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위반건축물 세움터 등록을 의무화하고
국토도시실	30. 캠퍼스혁신파크 활성 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국토도시실	31. 도시재생사업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0년부터 주간단위로 지자체의 실집행을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32.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가로·자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 완료 ('21.7.20) 및 시행('21.9.21)</li> <li>*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용권 부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완화(100%→80%),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규제완화,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li> <li>○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1차 선정(4.29, 20곳) 및 관리계획 수립 중</li> </ul>
국토도시실	33.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국토도시실	34. 한국감정원과 국토정보 공사가 각각 수행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 일원화를 검토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중장기 검토 &gt;</li> <li>○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임</li> <li>○ 시장·군수가 빈집 실태조사 시행에 필요 시,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정보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탁기관 선정주체는 시장·군수에게 있음.</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35. 주택도시기금(도시계 정)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 되고 있지 않은지 조 사할 것	○ 수요자중심형 융자가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20.4월부터 중점관리 사업장 대상 월별 점검 및 분기별 전
주택 토지실	36.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통계(KB) 간의 주택시장 관련 통계에 차이가 발 생하고 있어 신뢰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으 므로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동향 조사 개선방안 마련('20.12월, 한국부동산원)
주택 토지실	37. 감정원이 수행하는 과다 한 공시업무를 지자체 에 이앙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 공시가격 시스템 성능개선('20.11월)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38. 원도심을 중심으로 LTV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주택토지실	39. 전세 가격 상승이 지속 됨에 따라 전세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주택토지실	40. 85㎡ 초과면적에 대해 다자녀 특공비율을 늘리고, 60㎡ 이하는 줄이며,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 특공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택규모를 감안하여 특별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 발송('20.02.28.)한바 있으나, 면적에 따른 공급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b>토</b> 지실	41. 5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국토부의 기존 제도 운영 및 유권해석과 다른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차 인 보호를 위한 종합대 책을 마련할 것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우선 분양전환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12.22, 시행 '21.3.23.) - 하위규정 개정('21.3.23.)
주택 토지실	42.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 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주택 토지실	43. DSR을 산정할 때 주택 담보대출 외에 전세자 금대출과 임대료보증 금을 채무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금융위, '21.4.29) * 차주단위 DSB 단계적 확대 생애소득주기를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	44. 규제지역을 시나 구 단위로 지정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제한이 과도한 부분이 있으므로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 지정(택지 개발지구 등 해당지역 여건 고려하여 지정
주택토지실 -	45.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중 청약저축과 국민주택 채권의 수도권 비중보다 공공임대주택 지자체 보조금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지역별로 균형있게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임대주택 지자체 보조금 편성은 지자체(지방공사) 재정여건, 부지 확보 현황, 지자체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 하여야 하므로, 매년 지자체(지방공사) 수요조사에 기반하고 있음 -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46.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 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 안을 검토할 것	○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일정 금액(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b>토</b> 지실	47. HUG 법무사 보수 관련 민원 제도개선 방안 을 검토할 것	
주택 토지실	48. 초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월세의 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	○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205만호 규모의 공급 확대방안 마련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b>토</b> 지실	49. 주택 은행 제 를 통해 주택의 매도, 매입 시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	운영중이며, 시장상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주택 토지실	50. 1,2인 가구 임대주택 소득기준이 최저임금이 나 자활근로제 등과 비 교할 때 지나치게 낮아 입주대상이 제한적이므 로 이를 개선할 것	○ 1인가구는 소득요건 20%p 상향하고, 2인 가구는 10%p 상향하는 내용의「공공주택
주택 토지실	51.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나, 이 를 전세매물이 없다는 등 으로 과장하는 보도가 있 으므로 적극적으로 대 처하고 임대차3법 효 과를 적극 홍보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52. 질 좋은 평생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다음의 제안을 검토할 것	
	,	○ '21년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중 약1천호를 중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
	-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공공분양주택의 수준까지 제고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필요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 자격을 중위소득 150%이하(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80%이하)로 정함으로써 공급대상에 중산층까지 확대 완료 (공특법 시행규칙, '21.4 개정)</li> <li>*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20.11.)</li> </ul>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분양과 임대가 구분되지 않도록 세대 믹스를 할 필요	
	-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작은 크기의 주택을 건설 할 때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	○ '21년 국민·영구·행복 등 건설형 재정지원 단가를 7%인상하는 등 재정지원 기준
	- 분양자 형편에 따라 주택의 지분을 장기간 나누어 취득할 수 있 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실거주자에게 공급할 필요	○ 시군적립영 구택 도립들 위안 중중구 택특별법」개정 완료 * '공공주택 특별번' 개정완료('21.5.)
주택 <b>토</b> 지실	5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회의 신속·공정한 하 자처리를 위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하자심사분쟁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	54. 하자심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를 위하여 제척·기피· 회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세석사뉴 강와 및 기피신성 실사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주택 토지실	55. 주택관리사의 법정 의무 교육비를 입주민이 부담 하고 있어「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개정 등을 통해 관리비 항목 에서 교육비를 삭제할 것	○ 공동주택 법정교육비에 대한 입주자의 의사결정권 보장 및 각종 협회비 지원 관련 시도 준칙 삭제 권고 시행('21.4.)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5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에서는 온라인 교육 등 저비용의 교육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O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온라인교육*을 추가 도입하여 교육비 인하 및 교육여건 개선('20.12~)  *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등 6개 과정
주택토지실	57.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처벌규정 도입을 검토할 것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간접흡연의 피해기준 및 측정 방법상 한계가 있어 일률적인 제재 보다는 자율적 질서형성 지원이 바람직(국토위 법안소위 결과, '21.2.23.)</li> <li>○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 흡연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21.10.21. 공포·시행)</li> </ul>

주택토지실 58. 총건소음 사후인정제도에 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일정등급 이상의 완총재 사용 및 기준치 총족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마련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58. 층간소음 사후인정제도에 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기준 마련, 일정등급 이상의 완충재 사용 및 기준치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ul> <li>○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의 '22년 도입을 위해,</li> <li>- 온돌 문화인 우리나라의 주거방식 특성이 반영된 충격원 및 환산방식을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여 ISO 717-2 개정 완료('20.12.2)하였으며, '22.2월까지 KS 개정 예정</li> <li>- 일정 수준 이상의 완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인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해 사후 성능검사를 통해 기준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22.6.)</li> <li>* 사후 확인제도의 성능기준 마련을 위한연구용역(KCL, '21.6.~12.)</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주택법」하위법령 개정 추진('21.下)</li> <li>○ 「주택법」및 바닥충격음 평가방법 KS</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59. 10년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을 장기 공공 임대주택에 포함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데, 이는 현행법령에 부합 하지 않는 것이므로 통 계를 법령에 맞게 작 성할 것	○ 통계청 협의를 통해 공표되는 임대주택 재고 통계는 각각의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중 *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10년임대, 장기전세,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주택 토지실	60.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중을 OECD 평균 1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 련할 것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한
주택 토지실	61. 분납 임대주택의 경우 주민이 원해도 조기 분양전환을 안 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 위반이므 로 국토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분납 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시행 중('21.2월~)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b>토지실</b>	62. 우수부동산서비스인정 제도, 연금형 희망나 눔주택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한계차주 주 택매입사업 등 현장성 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족한 부동산 관련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 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 립할 것	○ (우수부동산서비스인증제도) 소상공인 수수료 완화 및 인증사업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요령」개정('21.4.28) - KTX역사광고 등 홍보 강화 및 인증사업자 역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 매입대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실적이 크게 저조하여 현재 사업을 중단중</li> <li>* 대부분 시장에서 매각 가능성이 낮은 불량주택이 접수되어 매입실적이 저조 ('18년 3건, 19년 3건)</li> <li>○ 주택매매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입대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보다는 1번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기존주택 매입방식이 고령자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고령자 주택 공공리모델링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음 ('21.1월~)</li> </ul>
		< 조치실적 : 완료 >  ○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절차 효율화를 위한 임대리츠 기금 출자심사 지침 개정('21.1.),  - 도심내 상가 공실 등을 활용한 비주거리모델링 임대주택 기금대출 신설('21.8.)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조치실적 : 완료 >  ○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20년부터 사업  예산 미반영 등 추가 사업추진(매입) 중단
주택 토지실	63.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투자위원회에서 심사 할 때 사업계획 승인 이행 조건 등을 검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것	○ 사업승인 이행조건 등 면밀 검토를 위한 규정 개정('20.12) * 사업부지 현황 사업승인 조건 명시 등
주택토지실	64. 매입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의 표준 관리 방안 및 매입시 화재, 안전사고 등과 관련 된 공통 기준을 마련할 것	○ 매임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약정 주택 공통기준(설계·시공 가이드) 및 기존주택 매입시 매입기준(외벽의 불연재 여부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65. 20년 이상 다가구 주택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 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장기 미임대 노후주 택을 리모델링하여 임 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1년의 경우 8,200호를 리모델링 매입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주택토지실	66. 법인 보유 부동산 중 주거목적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높게 적용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법인은 주택 처분시에 법인세(10~25%), 양도소득 특별세*(20%)를 부담하고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67. 반지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하여 반지하거주기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전 수 조사를 실시할 것	○ 반지하 주택 거주가구 지자체 조사 완료 ○ 조사 내용에 따라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주택 토지실	68. 2018년에 실시한 최저 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개선 할 것	○ 우거공산에 내안 새도운 요구, 국민 평판
주택 토지실	69. 근본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보편적 공공 재로서의 주거서비스 가 필요하므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li>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분양형 공급을 위한 법령 개정 완료*</li> <li>임대형은 공공임대 대기수요·재원 등</li> <li>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li> <li>* 주택법 개정완료('21.1.5)</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70. 주거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 된 예산과 자원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주거빈곤가구 등 주 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적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장 임대로 수준의 고가 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 보다는 공공임 대주택에 대한 지원 및 공급을 확대할 것	○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토지 우선 공급비율이 3% 이상이었으나, 1% 이상 3%미만으로 축소(50만㎡ 이상) * 민임법 시행령 개정('21.04.)
주택 토지실	71.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 급 확대 및 입주요건 완화, 고령자 주택개조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노 인가구 최저주거기준 마련 등 고령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	○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목표를 1만호(~'25년)로 확대(주거복지 로드맵 2.0, 20.03.),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요건 완화를 위해 사업대상 주택유형을 영구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까지 확대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72. 임대주택 입주자 부담 완화와 임대주택 사업 손실 축소를 위해 LH 조달금리보다 높은 주 택도시기금 이자율 인 하를 검토할 것	○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자금 대출금리 0.3%p 인하('20.9)
주택 토지실	73. 아동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현황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의 맞춤형 주거 를 제공할 것	○ 2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방
주택 토지실	74. HUG의 전세금 안심대 출보증, 위장 계열시를 통한 보증 발급, 허위 광고 등의 관련 사기 행각이 선량한 국민의 부담으로 전기될 기능성 도 있으므로 근본적 대응 책을 마련할 것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주택가격 과다산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가격 산정기준 요건 개선(HUG 보증규정 개정, '21.10)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75.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수를 확대하고, 대면회의를 활성화하며, 회의록 작성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	○ 민간위원수 확대 등과 관련된 주거 기본법 개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식의*중으로 '21년 정기국회 회기내 번륙
주택 토지실	76. 정부가 주택법을 위반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위반사례의 과반수에 대하여 공급계약 취소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해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1. 2) ○ 또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주택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조치가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 점
주택 토지실	77. 분양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주체 신고 누락, 축소 신고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시범통계를생산하고 있으나 시의성 결여 등의 문제가었으므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되성 및 시의성 확모들 위하여 거대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식의 미분양 통계 시범 생산하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시범통계 생산(~'22) → 국가승인통계 고표 추지('23)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78. 잘못된 수요 예측과 교통환경으로 인한 공공 임대주택 공실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	○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득·자산
주택토지실	79. HUG 집중관리 대상자 (악성채무자)의 자진상환 유도뿐만 아니라 재산 도피행위에 대한 적극적 인 민·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며, 악성채무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	○ 다주택채무자 집중관리계획 수립 및 매월 모니터링 진행 ○ 악성 다주택채무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b>토</b> 지실	80.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공급절벽 가속화 대책 마련할 것	
주택토지실	81. 다주택 악성채무자가 보유한 전세는 전세보증 금반환보증 가입이 불 가능하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지 여부를 확인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	○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임대인의 정보공개는 불가능함에 따라, 관련 법 령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82. HUG 기업보증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 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HUG 기업보증 사업장 위험관리* 및  분양보증 부진 사업장 지정기준 강화('21.5)  * 공정률 80%이상 사업장 사후관리기준 강화
주택 토지실	83.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에 비하여 주거실 태조사 표본이 축소 조 사되고 있어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 계가 있으므로 주거실 태조사를 개편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완료 &gt;</li> <li>○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표본조사 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조사가구는 응답률을 높임으로써 축소 조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2021년 주거 실태조사부터 적용('21.8~'21.12. 대면조사)</li> </ul>
주택 토지실	84.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영유아 자녀에 가점을 주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하 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에 따른 가점 기준은 없으며, 보다 많은 신혼 부부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85.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영업부 서장이 임의로 비교사 업장을 선정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 분양가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 완료('21.2) - 입지·단지특성·사업안정성을 점수화하여 비교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고, 상담 이외의 심사 업무는 본사에서 전담하도록
주택 토지실	86. 공공기관인 HUG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지분 을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지분 취득계획 수립을 위한 HUG자체 용역 수행(삼덕회계법인, '21.8월 완료)
주택 토지실	87.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강제퇴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시지가 현실회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현행 보유세 과세체계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 부담 상한제 도와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완충장치를 이미 마련 -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여 공시가 6억원 이하 1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0.05%p 인하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88. 청년에게 적용되는 대출 및 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금융위, '21.4.29)  *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등
주택 토지실	89.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것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신규 임대료 규제도입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li> <li>-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음</li> </ul>
주택 토지실	90. 재해주택 복구 및 구입 자금 대출한도를 상 향할 것	
주택 토지실	91. 외국인이 집주인인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하고, 세입자가 신고 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 할 것	○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20.12)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9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세입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 미성년자가 집주 인인 주택에 대해서 보 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것	○ 미성년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 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20.8)
주택 토지실	93.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 려는 경우라고 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고 해 당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 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문제 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매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주임법 해설집을 통해 기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b>토</b> 지실	94. HUG의 다주택 임대사 업자 전세보증금 대위 변제에 대한 개선방안 을 검토할 것	○ 다주택채무자 집중관리계획 수립 및
주택 토지실	95. 업무태만, 갑질, 회삿돈 유용 등 심간한 문제를 일으킨 주택도시보증 공사 사장을 해임할 것	○ 신임 HUG 사장 선임('21.4)
주택 토지실	96. 청약업무 신뢰 제고를 위한 인력의 양적, 질적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전문기관을 통해 청약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20.10)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97. 취약계층 주거안정 등 영구임대주택 취지를 고려한 외제차 보유 자 관리대책을 마련 할 것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① 관리실태 전수조사, 타인차량 편법 운행 제한 조치 등 관리 강화 및 자동차 가액 현실화(2,500→3,500만원)</li> <li>*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개정(21.4)</li> </ul>
주택토지실	98. 디지털트윈의 전주시 실증 모델을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타 지자체로 확대하 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자체 특성에 맞는 디지털 트윈 기반 행정활용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b>토</b> 지실	99.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 조치실적: 완료 > ○「연속지적도 관리·운영 개선 추진방향」 보고(정책관 방침결정, '21.3) ○「연속지적도 정확도 제고 및 관리체계 개편 연구」용역 시행 추진계획 방침 결정('21.4) ○「연속지적도 정확도 제고 및 관리체계 개편 연구」용역 시행('21.5~12)
주택토지실	100.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포함된 지하시설물 정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 추진 근거 마련,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공공측량성과심사 공정성 문제 해결 및 수수료 수익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완료 &gt;</li> <li>○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성과심사업무를 수탁시행하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21.24) 및 공직유관단체 지정(21.7.1)</li> <li>*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의적용대상이 되어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적용</li> <li>○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사 시 수수료 수익을공목적으로 재투지했는지 여부 검토(21.224)</li> <li>*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사용용도는 공공목적으로 제한중(기시행)</li> <li>- '20년 수수료 잔액은 노후장비 교체 등에 재투자하고, '21년 수수료는 공공측량 관련R&amp;D 및 역량강화교육, 해외기술협력 등공공목적에 투자하도록 관리</li> <li>○ 성과심사 현황 및 수수료 집행실적 등점검('21.5.14~18)</li> <li>- 기술료(R&amp;D, 역량강화교육비 등) 집행실적이 미흡하여 개선대책 마련 조치</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 및 공공목적 재투자실적 경영평가 반영 추진(~'21.12)</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102. 지적재조사사업의 이 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 하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 예산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촉진 등을 위해「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주택토지실	103.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해임된 LX 前 상임 감사에 대하여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완료 &gt;</li> <li>○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방안에 대한 검토는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있는 LX로 하여금 위법사실 및 손해 사실에 근거하여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토록 요청 완료('21.10)</li> </ul>
주택 토지실	104.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등 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폐지할 것	○ 부동산원을 통해 전주, 청주, 창원, 원주, 포항, 천안 등 분양리스크가 큰 지방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105.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 지반상태와 인체 유해성 항목을 포함할 것	○ 안산산단 기운에 시만상대 및 인제휴애성
주택 토지실	106. 공공재건축·재개발 과 정에서 기부채납 받는 소 형주택의 평수를 도정 법 개정으로 국민주택 규 모까지 확대할 것	○ 도시정비법 개정('21.7.14 시행)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하는 주택이
주택 토지실	107. 공공이 소규모재건축을 시행하여 주택을 기존 대비 1.5배 이상 공급하면 용 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을 지원할 것	○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국토위
주택 토지실	108. 조합의 요청이 없으면 공공 매입이 불가능하고 민간에서 4년간 임대주 택으로 활용 후 팔 수 있 는 허점이 있으므로 관 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 할 것	○ '도시 및 무거완경성미립」 개성안 발의('20.10.28, 소병훈 의원) *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109. 1+1 재건축을 선택한 경우 전매제한과 다주택자 증세로 인한 부담이 크 므로 보유세 • 양도세 면 제, 전매제한 해제 등 구 제책을 마련할 것	○ 1+1 주택은 소유주가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여 선택한 것이며, 거주 하지 않는 주택에서는 임대에 따른 수익도
주택 토지실	110. 공공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 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명확히 협의할 것	o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공공기관의 투자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택 토지실	111. 토지 소유 현황 자료 공개를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기본적인 토지 소유 현황 통계자료는   '18년부터 매년 공표 중(기시행)   * 공표년도: 2007년, 2013년, 2018년, 2019년, 2020년(5회)
주택 토지실	112.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 화 사업 외산 몰아주기 관 련 국토교통부 차원의 감사 를 진행하고 보고할 것	○ 안국도시구텍중사는 파립시시시 등에    특정 업체·제품만이 가능한 내용의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13. 인터넷 광고를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 등 부 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 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 련할 것	○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의 금지와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주택토지실	114. 비주거용 부동산 가 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주거-비주거용 부동산 현황 및 현행과세기준 등 검토</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 과세기준 간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장기 검토</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 토지실	115. 호반건설의 자산관리회 사 및 리츠 인가신청은 편법적인 행위가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 격하게 관리 감독할 것	○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요건 개선*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공공주택 추진단	116. 사업지연으로 인한 본청약 지연이 발생하 기 않도록 추진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청약 시 행할 것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선별하여 '21년 사전청약 3만호 세부계획 발표('21.4)
공공주택 추진단	117. 3기 신도시 자족면적 조정 등을 통해 공공임 대 확대하고, 계층혼합 형으로 공급할 것	│ ○공공주택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공공주택 추진단	118. 공공주택사업에서 지방참여 확대방안 검 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3기 신도시 등은 입지발표 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참여형 개발로 추진되어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 중         지구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연천시 나버 나버 나버 남양주 GH 당하다로의 이천도로 이번도로 무천도로         시행자 나버 나버 남양주 GH 당하다로의 하남도로 이번도로 하남도로 이번도로 모양도로 부천도로         < 향후 추진계획 >         ○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지방공사 등 사업참여방안을 협의 중이며, 3기 신도시 등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
공공주택 추진단	119. 3기 신도시 지구별 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 하여 광역교통개선대 책을 추진할 것	○ 3기 신도시 사업시행에 따른 장래 활동
공공주택 추진단	120.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 검토할 것	○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 생활편익 향상을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21. 4대강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의 특별사면의 대가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출연토록 하 였는데, 관련 건설사들이 소극적이므로 출연을 독려할 것	<ul><li>건설업계에 조곡한 약곡 이행들 지속</li><li>촉구 중(이행촉구 공문 시행, '21.5.3)</li><li>향후 추진계획 &gt;</li></ul>
건설정책국	122.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협회장이 건설사업자의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할 것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마련
건설정책국	123. 건설사업자의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자격에서 협회장을 비롯한 당연직 운영위원이 맡을 수 없 도록 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마련 ('21.2.9)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21.4.6)
건설정책국	124.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시업자의 공제조합 운영위원 연임 횟수를 제한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마련 ('21.2.9)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21.4.6)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25.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협회장이 운영위원을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 하도록 조합원 운영위원들은 반드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마련 ('21.2.9)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21.4.6)
건설정책국	126.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법에도 없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을 이행하고 있고 특히 1인 사업자들은 단 한 건의 불이행이 없음에도 서울 보증보험 등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 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이행보증서 교부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이행보증서 교부 요청 금액을 당초 100분의5에서 100분의5를 삭제하는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20.9)
건설정책국	127.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 위원회 구성이 30인이하, 조합원은 2분의 1미만 으로 되어 있고, 국토교 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 과반을 차 지하는 쪽에서 운영위 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 해서 검토할 것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마련 ('21.2.9)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21.4.6)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28. 전문건설협회의 판공비 집행내역을 제출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완료 &gt;</li> <li>○ 미제출자료 제출 독촉 및 보완('20.11), 기관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실시('21.1, '21.2/10일간) 및 처분요구서통보('21.6)</li> <li>- 조치내용 : 판공비 집행 투명성 제고및 제도개선방안 마련</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판공비 사용규정을 폐지하고 업무활동비사용규정을 제정하는 등 판공비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 진행 중</li> </ul>
건설정책국	129. 하자 발생 건을 시공 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에 반영할 것	
건설정책국	130. 전문건설협회의 회계 부정과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재조사하 고협회가관련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며,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설립 취소등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필요시 관련 규정 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	○ 미제출자료 제출 독촉 및 보완('20.11), 기관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21.1, '21.2/10일간) 및 처분요구서 통보('21.6) - 조치내용 : 판공비 집행 투명성 제고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31.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전문건설협회 기관지 발생에 지원해주는 자 금의 지출 내역, 협회 산 하의 건설정책연구원에 지원한 자금의 지출내역 및 변호사 수임 비용(7 억 7000만원) 관련 자료 를 받아 제출할 것	○ 5년간 전문건설신문(14억)과 건정연(25억) 세부 지출내역 제출('20.10.30) 및 변호 사자문관련 세부자료(중앙, 경기도회) 제출('20.11.3)
건설정책국	132. 전문건설협회의 지난 10년간 판공비 세부 지 출내역과 대한전문건설 협회 본부와 지부의 10년 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제출하고, 판공비 부정사 용에 대해 조사하고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미제출자료 제출 독촉 및 보완('20.11), 기관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21.1, '21.2/10일간) 및 처분요구서 통보('21.6)
건설정책국	133.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건설공사에 대한 전수조 사를 실시해서 입찰 과 정에 담합과 부정행위 등 이 있다면 문제점을 철 저히 규명할 것	○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확인결과 '15년 이후 담합 적발 실적이 없었고, 의심사례에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34. 건설공사대장 통보에 따른 업무가 과중하므로 다른 시스템에서 확 인 가능하거나 인허가 기관의 정보 등에서 중 복되는 항목은 과감히 조정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건설정책국	135. 건설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하도급 부당행위, 불공정 계약 등에 따라 적정 공사비, 특히 안전관리비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 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 결하고 체계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선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21.3)  - 동 센터에서 불공정하도급, 불공정계약 등 건설업 부당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건설정책국	136.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필요 (발주자가 노무비, 자재, 장비 대금을 직접 지급하 는 것으로 합의한 것만 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면제는 문제가 있음)	○ 노무비, 자재, 장비 대금 합의만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면제요건에 해 당하지 않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지급대상에 해당(서면질의 답변 완료, '20.10.23)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37. 건설산업 갈등해소 센터 활용 및 신고실적 향상 대책을 마련할 것	
건설정책국	138. 건설현장에서의 웃돈 요구 등 불공정 관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39. 건설현장의 집회 및 시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대책은 유명무실하 므로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21.3) - 동 센터에서 불공정하도급, 불공정계약
건설정책국	140. 바다골재채취업계에 대한 단계적인 구조조 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마나글새 재취업제 연왕, 마나글새 시상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41. 골재 선별ㆍ파쇄시설 입지 규제를 개선할 것	<ul> <li>조치실적: 추진 중 &gt;</li> <li>글재 선별・파쇄시설의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 수립・발표('21.6)</li> <li>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21.9.3∼10.13)</li> <li>*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시설 입지 허용</li> <li>ぐ향후 추진계획 &gt;</li> <li>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 추진('21.下)</li> <li>* 입지완화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해 시설규모 상향, 복구비 기준 마련 등</li> </ul>
건설정책국	142. 골재품질 조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순환골재의 수급과 유통 등 관련 절 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 리 기준을 마련할 것	○ 골재 품질검사제도 도입 및 순환골재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골재수급 및 품질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43.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 원에 타워크레인 총괄 기관으로서 점검 등을 위한 현장출입 권한과 국토부의 예산지원을 검토할 것	<ul><li>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li><li>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현장</li><li>점검 및 사고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li></ul>
		○ 조속한 법률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향후 입법 진행상황에 맞추어 하위법령 정비 등 추진
건설정책국	144.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검사 관리 프로그램은 타워크레인 사고 현황, 불법 구조 변경 및 허위 연식을 확 인할 수 없으므로 보완 할 것	○ 총괄기관 및 검사기관의 타워크레인 사고 이력확인을 가능토록 타워크레인 검사관리시스템 개선 완료('20.7, 안전관리원) < 향후 추진계획 >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45.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 원의 권한과 책임이 불 분명하여 역할을 제대 로 할 수 없으므로 개선 할 것	○ 준정부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건설정책국	146.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대료 적 정성 심사제도가 노동자 임금 하락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 할 것	○ LH, 도로공사 등 국토부 6개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실태조사 완료('20.12)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47.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형식승 인 시 제조사 인증을 글 로벌 인증획득으로 변 경하고, 설계도면대로 작 성되지 않은 장비의 퇴 출 또는 리콜, 불법 구 조변경 금지, 형식승인 관련한 전문인력 확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ISO 등 국제기준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반영한 건설기계 안전기준 개정 완료('20.7) ○ 제작결함이 확인된 FT-140L 등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 등록말소· 리콜 실시('21.2)
건설정책국	148. 대한건설기계안전관 리원은 타워크레인 총괄 기관으로써 준정부기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 도록 관리감독 강화, 조 직 개편과 인적 구성의 변 화, 정관 개정 등을 추 진할 것	○ 안전관리부, 사고조사부로 구성된 타워 크레인 안전본부 신설('20.7) ○ 타워크레인 총괄기관 업무규정 개정('21.1) *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업무 수행 및
건설정책국	149. 대한건설기계안전 관리원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 등록자료 등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을 개선할 것	○ 노후화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 하기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50.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시행된 후 믹서트 럭 번호판 불법거래를 양 산하여 오히려 등록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 도 실효성 논란이 있으 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불법 등록을 막 기 위해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요건을 변 경하고 업무처리요령 배포('19.7)
건설정책국	151.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은 현장여건 및 장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사고예방이 불가하므로 건설사가 주도하는 '현장 안전교육'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으로 대체·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선절기계의 특성을 고려한 결요성 있는 모 종사 안전교육 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 기계 안전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 진('21.10월 착수예정) ○ 한편, 교육생 편의 제고를 위해 교육기간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52.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인상 전에 고객 만족을 위한 자구노력을 선행할 것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20.7월부터
		○ 또한, 중소 건설기계 제조사 편의를 위한 형식신고 기술컨설팅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무료방역서비스 등을 수검자에게 제공 하여 '20년 기재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우수기관」으로 선정('21.4.28)
건설정책국	153. 건설업 업역개편 관련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개정은 상 위 법률에 부합하지 않으 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는 타 법에 의한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완료(「건설산업기본법 시
건설정책국	154.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시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의 의견을 경청할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과정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간담회('20.5∼10월,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55.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 종합공사나 복합유지 보수공사에 진출 시 등 록요건 완화나 면제를 고 려할 필요	○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건설 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4.15)
건설정책국	156.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유지보수 분야 실 적관리를 추진중에 있는 데, 유지보수 분야 뿐만 아 니라 신축분야 전체로 확 대할 필요	정보방(KISCOIN)을 동안 뉴지모두문야 실적관리 추진 중
건설정책국	157. 발주자가 건설공사 대장 통보방식을 자율적 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공 사대장 기재항목을 축 소하며, 통보시기를 완 화하는 등 건설공사대 장 통보제도에 대한 개 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모영국 조성 군미 중 < 향후 추진계획 > ○ 공사대장 통보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계획(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21.12)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58. 시설물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업체에 대한 전문인력·보유장비 기준 완화로 인해 안전관리가 형식화 되고 있으므로 제도를 정비 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경력 요건을 강화토록 제도를 개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개정, '20.2)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추진
건설정책국	159.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시설 안전 및 정밀진단 제도를 개선할 것	<ul> <li>&lt;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조치실적: 완료 &gt;</li> <li>○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하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li> <li>- 지반조사 강화, 취약구간 자동화 계측도입 등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개정 추진('21.7월)</li> <li>&lt; 시설안전 및 정밀진단 제도 조치실적: 완료 &gt;</li> <li>○ 시설물에 대한 안전·유지관리를 위해「시설물안전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점검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해「시설물안전법령」을 지속 강화'</li> <li>* 3종시설물 도입('18.1), 부실점검자 등록취소(3진아웃제), 과태료 상향, 부실 점검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20.2) 등</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60. 일부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가 영업정지 행정처 분 소송 기간 중에 영업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	○「시설물안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 정지기간 중에는 안전점검 등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
건설정책국	161. 국토안전관리원 설립과 관련하여 통합 대상 양 기관의 임금 차이를 해소 하기 위해 임금이 낮은 기관의 전 직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 가있어보이므로 합리적인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한국건설관리공사 직 원에 대한 고용 승계 방안 마련 및 국토 안전관리원 출범('20.12.10)
건설정책국	162. 국토안전관리원 지사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	
건설정책국	163. 건설관리공사와 시설 안전공단의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김천혁신도시 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리원의 교육 기능을 김천에 설치할 것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교육기능을 김천에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이 균형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64.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경우, 영세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ul><li>저가수주에 따른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li></ul>
건설정책국	165.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 력할 것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 관리원으로 변경('20.12.10)하고, 시설물
건설정책국	166.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채용과정과 근태에 대해 적절성을 확인할 것	○ 우리부 감사*('20.2)를 실시하여 개방형 직위 채용과정에 대한 적정성 확인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67. 건설 당시 강수빈도나 강우량, 용량 등을 고려 하면 지금과 맞지 않는 것이 다수인데 시설물 을 체계적으로 유지관 리 할 것	○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기반시설관리법('20.1. 시행)」에 따라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
건설정책국	168.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부양을 위하여 SOC 예산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SOC에 대한 계획적인 재투자방안을 마련하며 체계적인 SOC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ul> <li>○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 지속 확대</li> <li>* (SOC 유지관리 예산 추이) ('17) 10.1조원 → ('18) 11.0조원 → ('19) 12.6조원</li> </ul>
건설정책국	169. 지난 10년간 건설신기술 지정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 검하고, 건설신기술 지 정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제 도개선 필요	○ 건설전기술 시성 및 자우판리 점검 설치 ('21.6)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70. 건설 신기술 및 특허 진흥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 신기술 및 특허 업 체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향후 건설 신기술 및 특 허 관리에 대한 개선방 안 마련 필요	> 중법 글댓돔(가장)을 구축 중 > ○ 「시기스이 편기기즈 미 편기저치 드에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21.10)
건설정책국	171. 건설신기술이 시장에 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기술에 비해서 가격이 같 다면 성능이나 품질이 뛰 어난 기술을 성능이나 품질이 동일하다면 가격 이 낮은 기술을 신기술 로 지정하도록 할 것	○ '신기물의 평가기준 및 평가설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건설정책국	172. 증가하고 있는 건설 기술인 교육 수요를 해 소하기 위해 신규 교육 기관을 지정할 것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대행기관 지정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73. 취소 특허 및 10년이 지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지 않도록 신기술 지정제도를 종합적 점 검하여 제도개선 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등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21.10)</li> <li>○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업무지침(진흥원 내규)」개정 ('21.10)</li> </ul>
건설정책국	174. 「건설기술 진흥법」 에서 영업정지와 과징 금을 선택해서 처분하 도록 했는데 하위법령 에서 영업정지만 규정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고의·과실로 건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재 영업정지 처분만 존재하나,
건설정책국	175. 타워크레인 점검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 기계관리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중복 으로 실시하고 있어 개 선할 것	○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이외의 안전점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달('21.4.14)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76. 연약지반 부실 개량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부실 개량 방지 대책을 마 련할 것	○ 연약시만 구시소장 우 굴작공사도 인한 시만
건설정책국	177. 지반 침하 피해를 최 소화하고 침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 도록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
건설정책국	178. 추락사고 관련, 시스템 비계 도입 등의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공공공사에 대한 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 했고 비계·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등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79. 건설업 페이퍼검퍼니 근절과 불공정거래 건 설사업자 퇴출을 위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강화할 것	<ul> <li>조치실적: 추진 중 &gt;</li> <li>○ KISCON(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건설업체 공사실적, 재무정보 등을 분석 하여 부실 의심업체를 추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제공 중</li> <li>ኛ후 추진계획 &gt;</li> </ul>
		○ 건설업 부적격업체 조사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 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추진('21.下)
건설정책국	180. 100대 건설사에서 5년간 3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 으나, 영업정지는 6건에 불과하며, 안전에 관대한 규정이 노동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모든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 후,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과징금
건설정책국	181. 「건설안전특별법」 관련, 업계는 CEO 책임 강화 및 과징금 부과 규정에 반발하고 있으므로 업계와 이견이 잘 조율 되도록 노력 필요	○ 그간 엔시니어닝·시중 업계 간담외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82. 공공공사 임금직접 지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등 민간공사현장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민간확산 등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旣 마련('20.5)하고 민간으로의 제도
건설정책국	183. 사고감축을 위해 소 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 기술인 배치기준을 강화 하고, 추락예방 사업 지원, 안전대 기준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필요	○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고용부 등 관계기관
건설정책국	184. 공공 건설현장의 일요일 공사금지를 유지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 공사 시행의 제한) 시행('20.12.10)
건설정책국	185. 지하공간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와 지하공간개발등국민들의 불 안감 해소에 대한 정부 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안점하가 일정하는 무요 권인는 하구판   손상으로 작년 한해 131건 발생했으며, 전체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86.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부터 업무 수행과정, 조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할 것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위원 선정
		- 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조사, 사고원인, 재발방지대책을 발표('21.12월)
		○ 국토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지반침하 발생 시 지자체 사고조사위도 적극 운영토록 하여 유사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
건설정책국	187. 지하인전관리 기본계획과	< 조치실적 : 완료 >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관련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관할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등 지자체별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 서울시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완료
		* 지하시설물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육안 조사 및 지반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하안전 점검 매뉴얼 마련('21.8월)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88. 지하매설물 조사 분야 등에 대한 선진기술 도입 및 국산화 개발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ː
건설정책국	189.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명칭 개정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완료('21.7)  - 안전여부를 진단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용어 변경
건설정책국	190.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시대착오적인 법적 용어 인 '용역'을 다른 용어로 변경하도록 검토할 것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건산법 조치실적 : 완료 >  ○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건진법 타법개정 완료(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
건설정책국	191. 코로나19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일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폭 염기 건설노동자들 노 동조건을 파악하고 폭 염기 노동자 보호방안 을 마련할 것	○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지침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개정·배포('21.3.26) < 향후 추진계획 >
건설정책국	192. 건설현장 일요일 산재 사고 발생률이 높아, 일 요일 공사 제한 방안 및 일요일 휴무제 도입 방안 마련 필요	○ 공공건설현장에 일요일 공사를 금지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20.12.10)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93. 체불 증가에 따른 건설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 및 정착 방안 마련 필요	< 조치실적: 완료 >  ○ 공공 분야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대금 등의 청구·지급을의무화하는 임금직접지급제 도입을 旣원료('19.6, 건산법 개정).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제도 적용대상 확대(5천만원 → 3천만원) 등 완료('21.1 시행)하였으며상습체불시 불이익 강화 등 건산법 개정('21.1, 발의) 및 추가 개선 방안 검토도 지속 추진 중
건설정책국	194.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강재에 대한 정례적인 품질검사 필요	< 조치실적 : 완료 >  ○ 우리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철강재 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지속 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건설정책국	195. 공사현장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품질 검사도 건설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개하도록 건설부자재 품질관리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필요	○현장 시공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시험 및 외부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의뢰·실시하는 품질시험 결과(시험성적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공개토록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9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협의하여 민자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민자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자사업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사감리를 주무관청이 직접 발주·관리하고 있으며,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상정(의원발의)</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관리강화 법안 통과 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li> </ul>
건설정책국	197.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대기업들의 갑질 근절 대 책 마련 필	
교통물류실	198. 배달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나 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ul> <li>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제41조 공제조합 설립 법적 근거 마련)</li> <li>○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방안용역 착수('21.3)</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방안수립(~'21.12)</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199. 자동차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화물자동차가 화물 을 운송하는 사례가 빈번 히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필요	< 조치실적 : 완료 >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개정안 국회 통과('21.3.23.)
교통물류실	200.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	,
교통물류실	201. 현대 코나 전기차의 신속하고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리콜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0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강화할 것	
교통물류실	203.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인력 충원과 제조시에 대한조시권한강화방안을마 련할 것	○ (인력)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인력 확충
교통물류실	204. 조사와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를 개선할 것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05. 리콜 시정률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일정 시정률 미만인 경우 리콜 재통지 규정 신설(자관법 시행규칙, 시행 '21.2.5)</li> <li>○ 민간업체(카카오 등 6개 업체)와 리콜 정보 연계로 맞춤형 리콜알림 서비스 추진('21.6~8)</li> </ul>
교통물류실	206. 자동차 화재 등에 대한 리콜제도를 개선할 것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자동차 화재 등 원활한 사고 조사를 위한 자관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1.2.5)</li> <li>*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li> </ul>
교통물류실	207.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판스프링 단속을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을 증원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08. '오토파일럿 헬퍼'를 이용해 안전기능을 무력화 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방안 을 마련할 것	○ 온라인 판매업체, 테슬라 등 자동차업체에
		<ul> <li>향후 추진계획 &gt;</li> <li>'오토파일럿 헬퍼'등 안전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li> <li>*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발의(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21.5.3)</li> </ul>
교통물류실	209. 법인차량 번호판의 색상이나 내용을 달리 하는 등 별도표기를 통 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 련할 것	○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주무부처인 기획 재정부(법인세제과)에 전달하고 의견
교통물류실	210. 자동차검사시 판스프링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실 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할 것	○ 판스프링 등 완충장치에 대해 부적합처리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11. 지동차검사미이행 치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미수검차량 직권말소 도입, 과태료 상향* (자동차관리법 개정 완료, '21.4.13) * 과태료 상향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교통물류실	212.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물류실	213. 민간자동차검사소 부실 검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연2회 합동특별점검 및 적발업체 제재 대폭 강화</li> <li>* (검사하청) 3차 적발 지정취소 → 1회 적발 취소 (무자격검사) 2차 적발 지정취소 → 1회 적발 취소</li> <li>** 지정취소 검사소 재지정 기한 강화 (2→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li> <li>검사원 역량평가 결과 미흡검사원에 대한 보완교육 실시, 검사원 정기교육제도* 도입</li> <li>* 자동차관리법 개정 완료, '21.4.13</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14. 자동차검사 민간검사소 검사원 신분상 불이익 차단 방안 마련	
교통물류실	215. 자동차검사 적발 부실 검사소 지정취소 등 강 력한 행정처분 조치	. — .
교통물류실	216.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중 &gt;</li> <li>○ 성능점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 추진중('21.1,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li> <li>* 성능점검자 준수사항 및 제재 도입 등</li> <li>○ 성능점검 업무의 민간개방에 대하여 관련업계 의견수렴 진행('21.8.11~8.26)</li> </ul>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17. 자동차 관련 전산정보 불법제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것	. — .
교통물류실	218. 종합검사장으로의 변경 으로 인해 실직된 정기검 사장 기능사 검사원에 대 해 종합검사장 검사원으 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 실직된 기능사 검사원에 대해 종합검사장
교통물류실	219. 이륜자동차 정비업 에 대한 명문화 및 정비 면허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이륜차 정비자격증 및 정비업 제도 도입
교통물류실	220. 전조등 검사와 경유차 질소산화물검사에 대한 도입시기 유예나 정부의 구매지원 등 대책을 마 련할 것	○ 전조등 검사는 장비개발 및 보급 지연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유예하였음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21. 수소차 내압용기 재검사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수 소차 전용검사소 구축계획 을 마련할 것	
교통물류실	222. 자동차정비연합회 법 인 설립 특혜 논란이 제기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 사를 할 것	│ │○ 한국검사정비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의│
교통물류실	22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	<ul> <li>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피해지원 대상자 선제적 발굴을 위한 자배법 개정 완료('21.7월)</li> <li>*「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일부개정 완료 ('21.7.27 공포, '22.1.28 시행)</li> <li>○ 경제적 지원 사업 지원금 인상*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 중</li> <li>* (재활·피부양보조금) 22만원 → 30만원, (자립지원금) 7만원 → 10만원</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예산확보, 지원 대상자 선제적 발굴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완료('21.12월)</li> <li>*「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 입법예고 진행 중('21.9~10월)</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24.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시설 노후 및 재활치료 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	○ '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노후
교통물류실	22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를 개선할 것	<ul> <li>조치실적: 추진 중 &gt;</li> <li>○ 현지확인심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증원 완료('21.1월)</li> <li>○ 진료수가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보수가(한방) 기준 개선 연구용역 착수예정('21.10월)</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업계(보험·의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보수가기준 개선</li> </ul>
교통물류실	226. 국립교통재활병원 한의 진료과 설치를 검토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중 • 장기검토 추진 중 &gt;</li> <li>○ 아급성기* 다발성 손상환자 전문 재활 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의과 설치는 장기 검토사항으로 추진</li> <li>* 급성기(수술) 이후 회복 및 초기재활단계</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27. 휠체어탑승 고속버스 노선이 KTX 노선과 겹 치므로 조정할 필요	<ul> <li>조치실적: 추진중 &gt;</li> <li>○ 장애인 단체 및 버스운송사업자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휠체어탑승 고속버스 4개노선*(7대)을 결정</li> <li>* 서울↔부산, 강릉, 전주, 당진</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고속버스 시범사업('19.10~'21.6) 및 시외 버스 시범사업('21.11~)을 통해 탑승실적 분석과 관련 단체 협의 등을 거쳐 운영 구간 변경 등을 검토하겠음</li> </ul>
교통물류실	228. 휠체어탑승 고속버스 증차 필요	<ul> <li>조치실적: 추진중 &gt;</li> <li>○ 휠체어탑승 고속버스 4개노선*(7대)은 장애인 단체 및 버스운송사업자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li> <li>* 서울↔부산, 강릉, 전주, 당진</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고속버스 시범사업('19.10~'21.6) 및 시외 버스 시범사업('21.11~)을 통해 탑승실적 분석과 관련 단체 협의 등을 거쳐 차량 증차 방안을 검토하겠음</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29. 휠체어탑승 고속버스 운영 정상화 필요	<ul> <li>조치실적: 추진중 &gt;</li> <li>○ 휠체어탑승 고속버스 4개노선*(7대)에 대한 시범사업 중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외부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이용률이 저조함</li> <li>* 서울↔부산, 강릉, 전주, 당진</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고속버스 시범사업('19.10~'21.6) 및 시외 버스 시범사업('21.11~')을 통해 탑승실적 분석과 관련 단체 협의 등을 거쳐 운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겠음</li> </ul>
교통물류실	230.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발표('20.8.20, 국정현안점검회의)</li> <li>○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20.11.30.)</li> </ul>
교통물류실	231. 퍼스널모빌리티(PM)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논의기구를 신설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32. 6개 공제조합의 경영 상황 및 채용 비리 등 개선 필요	
교통물류실	233. 6개 공제조합 독립 법인화, 전문경영인 제도,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낙하산 인사 근절방안 마련	○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공제조합의 운영을 위한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발표('21.7월)
교통물류실	234. 렌터카 대리운전 사고 발생시렌터카 공제조합이 대 리운전자에 대하여 구상 권을 청구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상 '제3자 운전금지 조항'에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35. 택배기사 및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 책이 실시되도록 관리감 독할 것	<ul> <li>조치실적: 완료&gt;</li> <li>○ 관계부처(고용부·국토부·공정위)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발표('20.11.12)</li> <li>○ 종사자 권익 증진 제도 등이 포함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21.1.26) 및 시행(21.7.27)</li> <li>○ 분류작업 배제, 작업조건 개선, 가격·거래구조 개선 등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타결(1차 1.21, 2차 6.22)</li> </ul>
교통물류실	236. 택배 관련 택배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 망사고 사건이 계속 일어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 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	○ 관계부처(고용부·국토부·공정위) 합동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20.11.12)
교통물류실	237.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해 민관 공동기구 구 성 운영 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완료&gt;</li> <li>○ 국회 주관으로 택배기사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20.12.7)</li> <li>* 구성 :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택배사업 자, 소비자단체, 대형화주단체, 관계부처(고용 부·국토부·공정위·우본)</li> <li>○ 분류작업 배제, 작업조건 개선, 가격· 거래구조 개선 등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 타결(1차 1.21, 2차 6.22)</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38. 화물안전운임제와 같은 배달안전운임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배달 안전운임제를 통한 난폭운전 예방 등 교통사고 저감 실효성, 배달료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소비자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필요
교통물류실	239. 택배기사 산재보험료 분담 문제에 대한 추가대 책을 마련할 것	
교통물류실	240. 택배 노동시간을 제한 하거나 주말에 휴식을 보 장하는 등 택배 노동자 보호 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 하게 협의할 것	○ 관계부처(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 위원회) 합동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교통물류실	241. 배달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제41조 공제조합설립 법적 근거 마련)  ○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방안 용역착수('21.3)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42. 독감백신 유통을 위한 콜드체인 물류 공급망 확대를 검토할 것	
		○ 주요기술 연구 및 개발(~'23), 외부 연 계 실증(~'24)
교통물류실	243. 물류 설비의 성능, 규격 관련하여 국가인증제도 도입 및 실증센터 조성을 검 토할 것	○ 국내 물류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44. 배달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나 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제41조 공제조합 설립 법적 근거 마련)</li> <li>○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방안 용역 착수('21.3)</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방안 수립 (~'21.12)</li> </ul>
교통물류실	245. 과도한 화물운임 수수료 수취 방지를 위해 화주, 화 물운송업자, 중개업자 모 두가 받아들 수 있는 화 물운임 수수료 상한선 마 련 필요	○ 구선업계·와물업계간 의견대답이 점에 한 사안으로서, 주선수수료 현황 파악 (~'21.하반기) 후 검토할 계획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46.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 시 신고자 보호가 필요 하고,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 수수료 편취 근절 및 적극적인 과태료 처분 필요	
교통물류실	247. 자동차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화물자동차가 화물을 운송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필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개정안 국회 통과
교통물류실	248.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도로 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불량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49. 택배업체들이 법적으로 도서지역이 아닌 섬지역에 도 특수배송비를 추가 부과하는 행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생활물ㅠ시미스 개선 자원에서 기년 텍   배서비스평가 시 서비스 증진, 요금 합리
교통물류실	250. 택배노동자 보호와 물류 산업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교통물류실	251.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할 것	│ │○ 관계부처(고용부·국토부·공정위) 합동 「택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52. 강력한 생활물류종사자 과로사 방지 대책과 의 무화방안을 검토할 것	
교통물류실	253. 물류산업 거래구조 선진화 및 정책 패러다임 전 환을 위한 타부처 협조와 함께 예산·제도적 지원 필요	○ 물류분야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공정위) 및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마련(국토부)
교통물류실	254. 택배종사자 직고용 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유가보조금 지급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55.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 투입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등 정책부의 정책적 지원방안 을 검토할 것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교통물류실	256.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벌칙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기존에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규정하였으나, 행정처분 외에 '형벌' 추가</li> <li>○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강화</li> <li>★ 2022.1.28. 시행예정</li> </ul>
교통물류실	257. 사업용 이륜차에 대한 조속한 등록·관리대책 마 련과 대인2까지 의무보험 이나 공제조합 도입 필요	○ 생활굴뉴서미스립 세성(세41소 공세소압 설립 법적 근거 마련)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58. 배달대행 플랫폼사의 배달수수료 변동 등 기격 통제와 홍보방식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필요	<ul> <li>&lt; 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배달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현 법체계 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li> <li>- 다만, 배달업 인증기준에 종사자 보호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종사여건 개선촉진</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소화물배송대행 인증제 시행('21.12)</li> </ul>
항공정책실	259. 이스타항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ul> <li>조치실적: 추진 중 &gt;</li> <li>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21.1') 하였고, 법원은 회생개시 결정('21.2')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1.6.18에 인수자(성정)가 선정되어 회생계획안 제출('21.9.17.까지)</li> <li>★ (향후 일정) 관계인 집회 → 회생인가 또는 파산</li> <li>ኛ후 추진계획 &gt;</li> <li>법원의 회생인가 여부 등 이스타항공의 회생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겠음</li> </ul>
항공정책실	260. 코로나19 등 악화된 경영상황 감안,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일시적 면제 적극검토 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261. 송환대기실의 운영·관리 주체를 정부로 하는 등 정부의 책임강화를 강구할 것	○ 송환대기실 관리인력의 안전·인권 문제
항공정책실	262. 소형 항공사와 지역 항공사에 지원책을 검토 할 것	<ul> <li>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전반에 전례 없는 위기가 있어, 우선 이 상황을 극복 하는데 주력하고 있음</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향후 지방공항과 연계한 소형항공기 운항 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검토</li> </ul>
항공정책실	263. 미지급한 인천공항 해안 경계시설 분담금 150억원에 대한 조속한 상환방안을 강구할것	○ 미 강완 군담금(150억원) 서디 궁글 뒤애
항공정책실	264. 드론특별자유화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지자체 지원 등을 고려한 적합지를 선정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265. 인천공항 불법드론 출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드론 이용객증가에 따른 교육시설 및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항공정책실	266.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 시업 활성회를 통해 항공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 할 것	. – . –
항공정책실	267.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기준을 하향조정하고, 피폭기록 보관기간을 연장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할것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268. 조종사 최대 승무시간 초과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필요 시 제도를 개선 할 것	│ │○ 승무시간 초과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완
항공정책실	269. 항공안전장애 보고누락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할 것	
항공정책실	위한 공역확보 및 관제 절차를 개선하고, 공역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271. 승무원 피로관리에 관한 운항기술기준을 항공인전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승무원 피로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개정안미련(20.11), 행정예고(21.2~3), 부처자체심사(21.4)</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법제처 및 국조실 규제심사(21.10), 행정규칙 발령(21.12)</li> </ul>
항공정책실	272. 항공종사자 법정의무 교육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집체교육 으로 전환 검토 할 것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방식 검토·시행('21.2)
항공정책실	273.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 패스 사업의 대기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검토할 것	○ 인천공항공사가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항공정책실	274. 한국공항공사 보안요원 근무지 이탈 등 항공보안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 할것	○ 항공기 비운항 시간대 보안요원 근무 방법 등 규정화(공항공사 자체규정), 보안 요원 업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275. 이스타항공 직원 임금 체납 문제에 대하여 사 업개선명령 등의 행정조 치를 검토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이스타항공은 현재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21.2 회생개시 결정)</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이스타항공의 회생진행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해 나갈 계획</li> </ul>
항공정책실	276. 형사사건 진행 중이 거나처분이 미확정인 자에 대한 출입증회수 규정 보완을 검토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277. 제주 제2공항은 과잉 투자이며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전환을 검토할것	○ 공항운영 효율성, 이용객 편의성, 운항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제2공항 건설이 최적의 대안으로 분석되었으며, 도민 정보공유와 의견 수렴을 위해 '20.4~5월 3차례 비공개 토론회, '20.7~10월 6차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7.20) 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항공정책실	278. UAM관련 정부와 민간이 공동투자하고 키플레이어가 협력하는 플랫폼, 클러 스터 구축을 검토할 것	○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학·연·관이 참 여하는 협의체인 UAM Team Korea 구성
항공정책실	279. 지역민 편의, 외국인 입국수요 대응등을 위해 거점공항 중심의 국제선 노선개설 및 지방공항 지점간 노선확대를 검토 할 것	○ 지방공항에서 취항하는 항공사의 시장성 확보와 이를 통한 노선 개설 유지 지원을 위해 '21년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280. 공항 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공항주변개발 추진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20.7~'21.6)</li> <li>○ '21.6월 시범공항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신청지자체 제안 모두 부적절하여 미선정</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21.하반기 중 시범공항 선정 추진</li> </ul>
항공정책실	281. 인천국제공항공사 신불 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 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시 로비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할것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인천
도로국	28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청주시 국대도 (북일-남일1) 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 연결 및 청주시 국대도(북일-남 일2) 사업의 통로박스 확 장 등을 검토할 것	[등산로 연결] O 120m 상당 우회하는 대체 등산로 설치 예정 [통로박스 확장]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283. 도로터널 재난빙송 수신율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중 > ○ 고속국도・일반국도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율 전수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중('21.9.~11.)
		< 향후 추진계획 >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21.12.)
도로국	284. 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에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사업 반영 검토할 것	
도로국	285.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게 2 차사고 위험차량 및 탑승 자 대피 등 위험방지 조치 권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경찰청과적극 협 의할 것	○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안전순찰원의 경찰공무원 보조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286. '여수 남해(해저터널)' 도 로건설 사업을 「제5차 국 도•국자도건설5개년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o 기재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일괄 예타 시행한 결과, 최종 예타 통과
도로국	287.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재검토를 한 후 추진할 것	< 조치실적: 완료 > O 전문가, NGO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 운영('20.10.~')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및 환경대책 등 검토(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환경부 협의착수, '20.12.)
도로국	288.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 방 시스템 구축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중 &gt;</li> <li>○ 고속도로(도공) 영업소 AI기반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 시범 구축(~'21.12.) 중</li> <li>* 축중차로(20개소), 하이패스(6개소), 본선(1개소)</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연내 단속시스템 시범구축을 완료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업관리</li> </ul>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289. 도로시설물 노후에 따른 예산 증액 외 관리 대책을 검토 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O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인 정밀점검· 진단 실시 결과를 토대로 성능유지를 위한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있음  * "도로구조물 관리계획('20~'25)"을 수립('20.12)하고 연차별 유지관리 계획 및 소요예산 확보 방안 마련
도로국	290. ITS 관련 중소기업 성장 육성을 위한 신기술제품 적극도입 방안을 검토 할 것	o '21년 민간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 추진
도로국	291. 현재 건설중인 민자고 속도로의 IC 5개소가 초등 학교인근에설치예정이므로개 선방안 수립 할 것	○ 고속도로IC 인근의 교통안전성 확보를
도로국	292. 고속도로 사고 접수, 긴 급신고전화 통합 운영을 검토 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O 행정안전부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긴급 신고전화(112 및 119) 서비스 통합완료 * 고속도로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난활동을 위해 긴급신고전화(112/119) 통합 운영 중('21.7.~)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293. 제천-영월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완료 >
도로국	294.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시업 구간 내 검단IC 개선을 검 토할 것	
도로국	295. 성남·장호원(6·2공구) 도로 건설공사의 조기 착공을 검토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296. 화물차 운행제한 적발 시화주 처벌 강화 및 적재제한 (중량) 위반처량 단속을 위한 제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 운행제한 적발시 화주 등의 처벌 강화를
도로국	297.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인증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도로국	298. 충주휴게소에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O 민간시업자 공모를 통해 중부내륙선 충주休청원 수소충전소 구축 협약체결 완료('20.12.)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299. 괴적차량 근절을 위해 고속 축중기 시업 상용화 방안과 화 주 • 운송시업자에 대한 처 벌강화를 위해 양벌 규정 을 검토할 것	<ul><li>축중기 성능인증체계 도입 등을 위한</li></ul>
도로국	300. 「제5차 국도 •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남원지역 후보시업의 최대한 빈영을 검 토할 것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이 남원지역 후보사업 중 500억 이상 사업 1건은 기재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를 통해 일괄예타 시행한 결과, 최종 예타 통과('20.3~'21.8).</li> <li>- 일괄예타를 통과한 사업 1건과 500억미만사업 3건을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하여 고시('21.9.)</li> </ul>
도로국	301. 「제5차 국도 •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강원지역 후보사업의 최대한 빈영을 검 토할 것	< 조치실적: 완료 >  O 강원지역 후보사업 중 500억 이상 사업 7건은 기재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를 통해 일괄예타 시행한 결과, 최종 예타 통과('20.3~'21.8).  - 일괄예타를 통과한 사업 7건과 500억미만사업 4건을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하여 고시('21.9.)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0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 제2기· 제3기 신도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서부권 급행철도 건설 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관계기관 협의('21.5월), 철도산업위원회
철도국	303. 코레일네트웍스 전·현직 임직원 비리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코레일네트웍스 감사실의 자체감사 후 감사결과('20.10~'21.2)에 따라 징계조치('21.3) *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위원실(하영제) 결과보고('21.4)
철도국	304.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05. 철도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으므로 DMB·FM 중계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수신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ul> <li>조치실적: 추진 중 &gt;</li> <li>○ 수신율 저하요인 분석을 위한 강릉선 재산터널(횡성~평창간) 재난방송 수신율 합동 측정('21.3, 철도공단, 한국전파진흥협회)</li> <li>□ (결과) 열차 내 수신율과 열차 외부(터널 내) 수신율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li> <li>○ '21년 재난방송 수신실태 조사(하반기) 시 철도 터널 수신율 측정 후 보정값 반영을 협의 ('21.9, 국토부, 철도공단, 방통위, 한국전파진흥협회)</li> <li>□ 현재 재난방송 송수신설비가 설치된 철도터널 (336개) 중 10%를 선정하여 터널 내 수신율 측정값과 열차 내 측정값 차이에 대한 보정값 적용기준 마련(방통위)</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재난방송수신설비가 설치된 철도터널(336개) 중 10% 선정(9월)하여 수신율 측정('21.10~11월, 철도공단, 한국전파진흥협회 합동)</li> <li>* 열차 내·외 수신율을 측정하여 보정값 산출 후 적용(열차 내 측정 시 적용)</li> </ul>
철도국	306. 민간사업자 참여 이후 GTX-C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 등에서 공식적 으로 요청하는 경우 검토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07. 부전역~울산 태화강역 간 광역철도 지정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21.7월)됨에  따라 광역철도 지정 완료
철도국	308. 수도권 지하철의 노후 전동차 교체에 대한 국비지원을 검토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완료 &gt;</li> <li>○ '21년도 국비지원 예산 1,132억원 확보 (서울 506, 철도공사 426, 부산 200)</li> <li>○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완료('21.1.12. 공포, '21.7.13. 시행)</li> <li>*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li> </ul>
철도국	309.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철도 유휴부지의 일반 재산으로 전환을 검토 할 것	○ '21년 철도유휴부지 관리계획'을 수립
철도국	310. 부전역~마산역 간 전동열차 투입을 검토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국회에서 '21년 예산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비(3억원), 시설비(17억원)가 반영</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타당성 조사와 병행하여 부전~마산선 이용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증가되는 다양한 방안 마련 계획</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11.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 공기업 무임승차 적자 보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지원 대신  '노후도시철도차량 교체비용 국비 지원'  으로 도시철도법 개정 및 예산 편성*  * '21년 신규예산 총 1,132억원 반영(서울 506억원, 부산 200억원, 코레일 426억원)
철도국	312. 부전~마산 복선전철 지반침하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민자사업자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시만심하사고) 안국시만공약외와 사고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13.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의 한국형신호시스템사업 입찰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입 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할 것	
철도국	314.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사 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관계기관 협의('21.5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21.6월) 등을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21.7월)
철도국	315.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히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재정당 국과 적극 협의할 것	○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개정안에 대해 철도부문 신규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16.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천안역사 개량사 업의 추진을 검토할 것	○ 사업계획 면성(무문개량 → 선면개당)글
철도국	317.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송정역사 개량사업의 추진을 검토할 것	<ul> <li>조치실적: 추진 중 &gt;</li> <li>의 역사 서비스수준 평가를 완료하였고,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역사증축 설계 용역 발주('21.9.) 추진 中</li> <li>&lt;광주송정역사 서비스수준평가 용역&gt;</li> <li>○용역기간: '20.10~'21.5</li> <li>○평가지표: 혼잡도, 이동성, 안전성으로 평가(A~下등급) -(혼잡도) 경사이동시설(계단 등), 수평이동 시설, 대기시설, 서비스시설(화장실 등)에 대한 각 항목의 평균값으로 혼잡도 평가 -(이동성) 역 내·외부 평균 이동거리를 0~300m 구간으로 나눠 등급 평가 -(안정성・노후도) 역 등가사상자수 및 기대수명 대비 잔존수명으로 안전성 평가</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의 역사증축 설계 준공 및 역사증축사업 착공</li> </ul>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18.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중부내륙권의 산업 및 관 광 활성화를 위해 전주~김천 간 철도건 설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점의('21.6월) 등을 거져 제4자 국가설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21.7월)
철도국	319.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 및 철도서 비스 확대를 위해 대구 ~광주 간 철도 건설사업 및 부산~광 주 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심의(21.6월) 등을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21.7월)
철도국	320. 이용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상의 철도역사에도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21. 남북 교류·협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해북 부선 철도건설 사업 등추 진여부를 검토할 것	○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남북철도
		- 예타면제('20.4), 기본계획 수립('20.12) 이후 사업 조속 추진 중
		○ 설계 및 공사 동시추진(T/K)을 통해 '21년말 착공, '27년 개통 목표
철도국	322.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 조치실적 : 완료 >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을 검토할 것	○ 전국 철도시설 13곳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서울시-철도공사 간 '솔라 레일로드 그린뉴딜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21.3.24)
		<ul> <li>'솔라 레일로드 그린뉴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실시계획 수립, 철도시설 사용허가(철도공단) 등 후속조치 실시</li> </ul>
철도국	323. 면목선, 강북횡단선	< 조치실적 : 완료 >
	사업 등을 포함한 제2차 서울시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검토할 것	○ 면목선, 강북횡단선 사업 등 포함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완료('20.11)
철도국	324. 서울 동부권 주민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분 당선 청량리역~ 왕십리역 간 노선 신설 여 부를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관계기관 협의('21.5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21.6월) 등을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21.7월)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25. 코레일과 SR 간 통합 또는 경쟁체제 유지 등 철 도산업 구조에 대해 국민 편의, 철도안전, 철도산 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적정한 철도산업 구조를 검토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철도국	326. 국민 편익을 위해 양기관의 통합보다는 한 국철도공사와 SR 각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 쟁체제를 확립하는 방 안을 마련할 것	○철도산업구조 문식 등을 포함한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제4차 철도 산업발전기본계획'용역 수행 중('20.11~'21.11)
철도국	327.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대전~금산~전주 간 철도건설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관계기관 협의('21.5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21.6월) 등을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21.7월)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28. 영상기록장치의 운전실 내부촬영 없이 운행정 보 기록장치로 운전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기관사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는 운행정 보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기록장지 실지를 면제하는 설도안전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20.11.25.)이 발의됨에 따라 국회 논의경과를 모니터링 중
철도국	329.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경부고속선과 충북선을 연결하는 오송연결선의 반영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관계기관 협의('21.5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21.6월) 등을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21.7월)
철도국	33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및 금가역 설치, 금가신호장(금가역)~ 동충주산업단지 지선, 충주~원주 간 철도건설 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관계기관 협의('21.5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21.6월) 등을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21.7월)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31. 중부내륙철도 개통 시, 충주~판교 간 직통열차 운행계획을 검토할 것	<ul> <li>조치실적: 추진 중 &gt;</li> <li>○ 중부내륙선(이천~충주) 개통 시*         KTX-이음(EMU-260) 열차의 판교역 연장운행 검토**(국토부-철도공단)</li> <li>* 이천~충주 간 KTX-이음(EMU-260) 14회 운행 계획</li> <li>** 판교역 반복선 등 추가설치, PSD 개량, 선로 개량 등에 따른 건설비용 발생(원인자 부담) 하고,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협의 필요</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원인자(지자체)가 충주~판교 간 직통 열차 운행의 타당성 조사 결과(B/C≥1)*를 제출하고,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합의 시 추진 여부 검토</li> <li>* 국가 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경우 <u>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 가능</u>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1조)</li> </ul>
철도국	332. 제3차 철도안전종합 계획의 수정계획이 7개년 계획으로 수립되 어 제4차 계획기간이 '23 ~'27까지로 되어 타계획과의 연계시행에 문 제가 없을지 검토할 것	<ul><li>철도안전종합계획은 국가교통안전기본</li><li>계획 등 유사 계획들과 연계되어 수립될</li></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33. 철도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적정수준인지 검토하고, 철도안전 관련 정책 수립 시 운영기관 등 의견도 수렴할 것	
철도국	334. 남북 경의선 국제열차 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18.6월),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 추진 중('20.12월~)</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운송협정 가입 절차*를 수행·완료하고 관련법률 개정** 등 거쳐 협정 가입 추진</li> <li>*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국회 비준동의 등</li> <li>** 조약의 국내법 수용을 위하여「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개정 추진('21.4 발의)</li> </ul>
철도국	335.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해 국제역 설치를 포 함한 남북공동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검토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국제열차 운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18.6월),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 추진 중('20.12월~)</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국제역 설치를 포함해 국제열차 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해나갈 계획</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36. 여주~원주 복선전철화 및 강천역 신설을 검토할 것	<ul> <li>조치실적: 추진 중 &gt;</li> <li>○ 단선→복선전철화 타당성 재조사 완료 ('20.12)</li> <li>보선전철 기본설계 완료('21.7),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완료('21.9)</li> <li>향후 추진계획 &gt;</li> <li>● 철도건설법에 따라 여주시 역 신설 건의시(B/C≥1)*, 타당성조사 검증용역 (철도공단 시행)을 통해 역 신설여부 검토</li> <li>* 국가 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경우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 가능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1조)</li> </ul>
철도국	337. 철도노선의 명칭 제정 시,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및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중부내륙선·남부내륙선 중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38. 남북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천역 개 량사업을 검토할 것	
철도국	339.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철도공사, 철도공단에 대한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	
철도국	340. 신차종 및 신기술 도입, 환경이슈 등을 고려하여 미 래철도 차량기지 재배치계획을 검토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국토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공동으로 연구용역으로 진행 중</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미래철도차량기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예정('21.11)</li> </ul>
철도국	341. 코레일에서 전동차량 구매 시 차량 제작사 간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42. 국유지 무단점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것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공단의 실태점검반 구성 및 점검주기 단축(분기 1회) 등을 통해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21.5월)</li> <li>- 변상금 미수납금에 대하여는 회수 전담 반을 구성하여 미수납금 해소를 위해 적극 징수 추진('21.6월)</li> </ul>
철도국	343. 서해선·장항선을 경유하는 서해 KTX 추진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관계기관 협의('21.5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21.6월) 등을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21.7월)
철도국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공공기관운영법령 등에 따라 임원추천 위원회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임원 선임</li> <li>* 서면질의 답변으로 旣보고('20.10)</li> </ul>
철도국	345.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시 용문~홍 천, 원주~춘천, 제천~삼척, 삼척~강릉등강 원도 건의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관계기관 협의('21.5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21.6월) 등을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21.7월)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46. 경원선(백마고지-군사 분계선) 복원사업 조기착공을 검토할 것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신탄리~백마고지 완공('14) 후 백마고지 ~군사분계선 구간을 착공('15)하였으나, 통일부 요청에 의해 공사중단('16.5)</li> <li>- 지속적으로 통일부 등과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복원사업 재착공 검토 협의</li> <li>○ 통일부에서 공사 재개결정 후 국토부로 복원사업 요청시 재추진 가능성 검토</li> </ul>
철도국	347. 여주-원주 복선철도 조기착공 추진을 검토할 것	<ul> <li>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복선전철 기본설계 완료('21.7),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완료('21.9)</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21.9~)를 거쳐,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고 준비중</li> <li>* 발주기관이 작성·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 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추진</li> <li>○ 입찰공고 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착공 예정('22.上)</li> </ul>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48.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노선에 화진포간이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철도국	349. 태백선에 고속화 차량 (EMU)을 도입·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철도국	35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구로선 건설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것	○ 관계기관 협의('21.5월), 철도산업위원회
감사관실	351. 전문건설협회의 부적절한 판공비 집행 개선 필요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전문건설협회·공제조합 판공비 관련 특정감사('21.1.11.~1.15./2.22.~2.26. 10일간) 실시</li> <li>- 감사 시 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판공비 집행 개선 방안(법인카드 사용 도입, 제한적 현금사용 허용, 현금사용 시 증빙자료 첨부 등을 이행하도록 감사처분('21.6.8.)</li> </ul>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감사관실	352. 2016년 판공비 불법 정치 자금후원 및 불법 정치자금 후원 관련 변호사 수임비용 에 대한 전문건설협회 감사 필요	○ 전문건설협회·공제조합 판공비 관련 특 정감사('21.1.11.~1.15./2.22.~2.26. 10일간) 실시
감사관실	353. 전문건설공제조합 2016년 감사 지적시항이 2019년에도 반복되고 있는 등 반복 지 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강력한 처분 필요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전문건설협회·공제조합 판공비 관련 특정감사('21.1.11.~1.15./2.22.~2.26. 10일간) 실시</li> <li>- 감사 시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공비 집행개선 방안(판공비 사용목적 기재, '22년 판공비 예산규모를 '21년 대비 30% 감액)을 이행하도록 감사 처분('21.6.8.)</li> </ul>
감사관실	354. 전문건설협회 등 국토 교통부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 사후조치 확인 필요	
감사관실	355. 공무원 다주택자 처분 어떻게 할 것인지	< 조치실적 : 완료 >  ○ 국무총리의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다주택 보유 고위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 고 있음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356. 공공기관2차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	<ul> <li>&lt; 조치실적 : 추진중 &gt;</li> <li>○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은 기대되나, 아직 추진방향 등 정부입장이 결정되지 않음</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는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결정</li> </ul>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357.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혁신도 시에 대하여 해당 대책을 마련할 것	

구분	<b>시정 · 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358.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조속히 고시하고, 대전·충남지역에 공공 기관이전 우선권을 부여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대전 · 충남 혁신도시는 대전 ·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신청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 향후 추진계획 >  ○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아직 추진방향 등 정부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임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359.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관련, 공동 혁 신도시인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예산 배정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광주·전남 연계협업사업 예산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임을 감안하여 총 80억원 (他 혁신도시는 각 45억원)을 광주시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360.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정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	○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 전 략('20.2), 공공기관 선도 활성화('20.9)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 혁신도시가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역량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361.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 재정집행상황 수시(격주) 점검회의 독려로 이월 최소화 ○ 복합혁신센터 미착공 2개소 하반기 착 공하여 '22년까지 준공 지원(11개소 1,054억원)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362.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균형 발전 특별회계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 혁특회계를 균특회계로 통합할 경우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363.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하고, 도심융 합특구와 연계하는 방안 을 검토할 것	ㅇ 혁신도시가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될
		< 향후 추진계획 > O 도심융합특구는 광역도심지에 지자체가 후보지를 선정하여 최적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계획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364.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구도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향후 추진계획 >     핵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나, 이전방침이 결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도심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제29조 1항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365. 대도시권이 이닌 중도시도 광역교통법안에 포함시켜 균형적인 교통대책 마련 필요	< 조치실적 : 추진 중 >  ○ 대도시권의 범위 및 광역교통시설의  요건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 마련 추진  *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KOTI, '21.5 ~ '21.12)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366.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의 교통혼잡도로 지정 필요	< 조치실적 : 완료 >  ○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고시 완료('21.7.)  *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간 혼잡도로 개설사업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367. 대전 충청권역 광역철도망 중심지역으로 정부세종청사 추가 필요	<ul> <li>&lt; 조치실적 : 추진 중 &gt;</li> <li>○ 대도시권의 범위 및 광역교통시설의 요건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li> <li>&lt; 향후 추진계획 &gt;</li> <li>○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 마련 추진</li> <li>*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KOTI, '21.5 ~ '21.12)</li> </ul>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368. 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 이견 조정 등 추진 노력 필요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369. 위례-삼동 구간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 필요	│ ○ 위례신사선 삼동 연장 사업을 제4차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370. 여주역 연계환승체계 개선을 위해 국비 지원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반영 필요	<ul> <li>▼조치실적: 완료 &gt;</li> <li>○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여주역 등 주요 철도역의 연계·환승체계 등을 검토하였음</li> <li>* 광역교통법 제10조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고 보조 대상</li> <li>- 여주역의 환승서비스 수준(LOS)을 분석한결과, 타 역사에 비해 양호한 B등급으로분석되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선정사업*에서 제외</li> <li>* 환승수요·환승서비스 수준(LOS) 등 시급성, 지역 간형평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검토하였고, 환승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사업을 우선 반영</li> </ul>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371. 수도권 지하철 기관 간 연락운임정산 분쟁에 대해 객관적 정산 및 제도 개선 필요	

구분	<b>시정・처리요구사항</b> (건의사항 포함)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372.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연장사 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마련 필요	○ 각 시사세에서 주신 중인 도시설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373.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추진 중인 트램 도입에 대 한 가시적인 성과 마련을 위 해 트램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개편을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것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7차) 및 타당성평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374.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시업 관련 정비창이전에 대해 검토 필요	